#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<br>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일자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「주택법」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정위원회 기능(안 제11조 6호 신설)

-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중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

⇒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주택법」제5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5. 14. ~ 6. 3.)

(2) 규제심사 : 의견없음.

(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의견없음.

성주군 조례 제 호

#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1조(조정위원회 기능)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다만,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과 당 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한다. | 제11조(조정위원회 기능)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. |
| 1. ~ 5. (생 략)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6.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|
| 6. (생 략) |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|